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

의안 번호	10622
----------	-------

요구연월일 : 2025. 5. 28.

요 구 자 : 정혜경 · 윤종오 · 전종덕
김남근 · 민형배 · 박홍배
임미애 · 강경숙 · 김선민
김재원 · 김준형 · 박은정
백선희 · 서왕진 · 신장식
이해민 · 정춘생 · 차규근
황운하 · 용혜인 · 한창민
의원(21인)

주 문

국회의원(이준석)을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

나. 국회의원 이준석은 2025년 5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

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젖가락을 꽂고 싶다’ 이랬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니까, 아닙니까”라고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음.

다. 국회의원 이준석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에서 국민을 상대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하여 성폭력을 자행했고, 이를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성폭력 발언의 피해자가 되었음. 이는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임.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이 방송의 성범죄 발언을 들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로 법률을 현저하게 위반한 것임.

라. 정치는 폭력과 혐오 위에 설 수 없고, 국회의원에게는 사회를 통합해야 할 책무가 있음. 또한, 국회의원은 “언행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차별·혐오·폭력적 표현”을 지양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성평등 사회로 진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

마. 국회의원 이준석의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인권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가 없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이준석을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제4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서적 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를 현저히 위반한 바,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함.